

■ 비티아이 주주제안권 행사 안내(2024년 중 게재 예정)

주주권의 보호와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위하여 주주제안권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■ 주주제안권

-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(상법 제 363조의 2)
-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,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구비 가능(상법 제 363조의 2 제 1항, 제 542조의 6 제 2항)

■ 행사방법

1. 제출기한: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 전

2. 제출방식

- 서면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, 이노밸리 F 동 8층
- 전자문서: IRCONTACT@COSMAX.COM

3. 자격

- 상법 제 363조의 2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% 이상을 소유한 주주 (2명 이상 주주의 공동행사 가능)
- 상법 제 542조의 6 제 2항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%이상 보유 주주 (2명 이상 주주의 공동행사 가능)
- 상법 제 542조의 6 제 2항의 지분요건 충족여부 판단 시 기산일은 주주제안 청구가 있는 날(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)의 전일을 기산일로 역산하여 판단하며, 위 지분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함
예)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, 매매거래내역서 등

4. 주의사항

회사는 법령 상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채택할 의무가 없음

■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

1. 접수된 주주제안 이사회 보고

2. 주주제안권의 행사요건 및 제안의 법령 및 정관 위반여부, 상법 상 거부사유 검토

3. 적법한 주주제안의 사항인 경우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

4. 제안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, 주주총회에서 의안 설명 기회 부여